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5] <개정 2018. 12. 31.>

<u>부양가족수당 지급 구분표</u>(제21조제2항 관련)

7 8	ህ	월지급액
구분 	부양가족	(천원)
1.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	가. 배우자	100
사람	나. 미성년 자녀 1명당	100
2.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	미성년 자녀 1명당	100
3.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	미성년 제매 1명당	200